

신문방송사 운영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기관은 해전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신문방송사(이하 “기관”이라 한다)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기관은 신문 및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해전대학교의 건학이념을 선양하고 대학 구성원들의 지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며, 본교 내의 여론창달과 건전한 학풍진작을 도모하고 대내외 홍보활동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기관은 해전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운영방침)

대학 구성원들 간에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대학 내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극대화하고, 본 기관의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각 기구의 특성을 상호 연계하여 지원 한다.

제2장 조 직

제5조 (기구)

본 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두며, 각 기구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신문사
- ② 방송국

제6조 (임원)

본 기관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신문 발행인 겸 방송국장장은 총장이 되고 본 기관을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주간은 총장이 조교수 이상의 전임 교원 중에서 임명하고 본 기관의 모든 업무에 대해 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집행한다.
- ③ 본 기관에 소속된 각 기구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신문사

제7조 (사업)

본 신문사(이하 “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신문의 발간
- ② 학·예술작품의 모집 및 시상
- ③ 기타 본 사의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

제8조 (조직 및 직무)

- ① 본 기구에는 편집국을 두며, 편집국은 해전대학교 신문의 편집, 취재, 조사 및 그 밖의 사무를 전담하고 주간의 지도와 감독 하에 이를 수행한다.
- ② 편집국에는 편집장을 두며, 편집장은 기자 중에서 주간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 학보 편집에 있어 주간을 보좌한다.
- ③ 편집장 밑에 기자와 수습기자를 둔다.
- ④ 기자는 수습기자로 선발되어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신문기자로서의 자질이 인정될 때 주간이 이를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⑤ 수습기자는 재학생 중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본 사 소정의 전형에 합격된 자로서 편집장의 추천에 의해 주간이 선발한다.

제9조 (편집회의)

편집회의는 수습기자 이상으로 구성되고 주간이 이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편집계획에 관한 사항
- ② 제7조의 본사 사업에 관한 사항

제10조 (발행 및 배포)

- ① 발행은 년 4회 이상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보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배포한다.

제4장 방송국

제11조 (사업)

본 국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①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 ② 일일방송 실시
- ③ 기타 본 국의 사업과 관련 되는 사업

제12조 (조직 및 임원)

- ① 본국에는 제작부, 아나운서부, 보도부, 기술부를 둔다.
- ② 방송실장은 국원 중에서 주간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고, 주간의 지도를 받아 본 국의 방송업무 및 제반실무를 담당하며 국원을 관리한다.
- ③ 각 부서장은 방송실장의 추천에 의해 주간이 임명하고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작부장은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부문에 있어 편집, 제작을 담당한다.
 - 2. 보도부장은 교내외의 보도에 관한 사항, 취재활동, 홍보 및 섭외를 담당한다.
 - 3. 아나운서부장은 본 국의 프로그램을 신속, 정확히 전달하며 신입 아나운서의 교육 및 양성을 담당한다.
 - 4. 기술부장은 방송기기에 관련된 제반 기술 및 기기를 관리한다.

제13조 (국원)

각 부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국원과 수습국원을 둔다.

- ① 국원은 수습국원으로 선발되어 3개월 이상 경과한 후 국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었을 때 주간이 이를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② 수습국원은 재학생 중에서 본 국 소정의 전형에 합격된 자로서 방송실장의 추천에 의해 주간이 선발한다.

제14조 (국원회의)

국원회의는 수습국원과 국원으로 구성되며, 월 1회 또는 필요시 방송실장이 이를 소집하며 주간이 주관하여 방송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제15조 (방송프로그램 제작)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는 본교의 학칙을 준수하고 주간의 지도에 따라 방송실장이 제작한다.

제16조 (방송원고)

방송 원고는 사전에 작성하고 주간의 지도에 따라 방송실장의 책임 하에 작성 방송한다.

제17조 (방송의 윤리)

본 국의 방송은 공익성과 교육성에 유의해야 하며 방송 표현은 대학의 품위를 유지하여 방송윤리를 지켜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18조 (재정)

본 기관의 재정은 학생 자율적 경비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9조 (집행)

본 기관의 재정지출은 총장의 재가를 얻어 이를 집행한다.

제6장 기자재 및 비품

제20조 (관리)

각 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및 비품은 관리대장에 정확한 보유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 (반출)

보유 기자재 및 비품을 교내외에 반출할 때에는 관리대장에 입출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일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주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변상책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 중 기자재가 훼손되었거나 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응분의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7장 상 별

제23조 (표창)

신문방송사의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는 주간의 추천으로 총장이 표창 할 수 있다.

제24조 (징계)

임무를 태만히 하여 각 기구의 고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대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자에 대해서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전에 제정되어 시행중인 신문사규정과 방송국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에 자동 폐기된다.